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1. 2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8년 1월 11일
- 다. 상정 및 심사일자 : 제133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2008. 1. 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 종 철

가.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산정 및 제2차 동통합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우리구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코자 함

나. 주요 개정 골자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여유기구인 “자치행정과”를 행정관리국 소관과로 함
(안 제4조)
- 2) 주민생활국에 “도서관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 3)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도시 계획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지적과 및 녹지환경과 를 둠(안 제7조)

- 도시관리국 사무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함
-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중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 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국 사무로 변경함.

◇ 참고사항 ◇

- 현행 : 5국·1소·1사무국·1담당관·30과·20동·1추진반(한시기구)
- 개편 : 5국·1소·1사무국·1담당관·31과·16동·1추진반(한시기구)
※ 부서 신설(도시디자인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2008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와 20개동에서 16개동으로 동이 통·폐합되는 등, 행정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구본청의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현행 5국·1소·1담당관·30과·1추진반(신청사)으로 설치된 구본청의 행정기구를 도시관리국에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함으로써 5국·1소·1담당관·31과·1추진반(신청사)으로 1개과를 증설하고자하는 것이며, 현행 여유기구로 존속되어온 자치행정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과로 조정하였고, 새로이 신설되는 도시디자인과의 소관업무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타부서(도시계획과,건축과, 건설관리과 등)등과 업무기능이 중복되는 사항은 없고 업무량은 적정한지 검토가

요구되며, 추후 행정기구를 변경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다수 주민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한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
하는 것이 보다 더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